

동행·매력
특별시 서울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4163호
2026. 7. 14.(화)



목 차

◆ 자치법규 등

[입법예고]

제2026-2110호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	2
---	---

자치법규 등**[입법예고]****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-2110호****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**

「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6년 7월 14일

서울특별시장

1. 개정 이유

최근 우리 시 주요 현안이 주택공급 확대, 정비사업 활성화, 도시공간 구조 개편 등 도시·주택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·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을 포함한 도시 전반의 전문성을 내포할 수 있도록 기존의 '서울총괄건축가'에서 '서울총괄계획가'로의 직명을 개편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기존의 서울총괄건축가의 직명에 서울총괄계획가를 추가함.(안 제36조제1항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(참조 : 건축기획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기획과(전화: 02-2133-7100, FAX: 02-768-8926, E-mail: nhj525@seoul.go.kr, 우편: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이 조례(규칙)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(<http://legal.seoul.go.kr>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이 조례의 개정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
조례·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
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1호 중 “「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」”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31조”를 “제31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“지방공기업법”을 “「지방공기업법」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3명이상”을 “3명 이상”으로 한다.

제36조제1항 중 “민간전문가(이하 “서울총괄건축가”라 한다)”를 “민간전문가로 서울총괄건축가 또는 서울총괄계획가(이하 “서울총괄건축가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2호나목 중 “교육시설관련”을 “교육시설 관련”으로, “사회복지시설관련”을 “사회복지시설 관련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37조제5항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38조 중 “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”를 “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(위원회의 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제10조(위원회의 기능) ① ----- ----- --.
1. 「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」의 제정·개정에 관한 사항	1. 「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」----- -----
2. ~ 6. (생략)	2. ~ 6. (현행과 같음)
7. 31조의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	7. 제31조----- -----
8. (생략)	8.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	② ----- -----.
1. 다음 각 목의 설계 발주에 관한 사항	1. ----- -----
가. 시장(시의 사업소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시가 설립한 공사·공단, 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“시장 등”이라 한다)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의 재원이 100억원 이상 투입되었거나 추정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(가로·공원·	가. ----- 「지방공기업법」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광장·교량 등의 공간과
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
이용하는 시설물을 포함한
다)

나. ~ 라. (생 략)

2. (생 략)

제16조(소위원회의 구성 등) ①
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
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
으로 구성한다.

② (생 략)

제36조(서울총괄건축가 운영 등)
①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
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
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
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
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
한 총괄·조정 등 건축·도시
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
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(이하 “서울총괄건축가”라
한다)를 위촉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③ 서울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
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(생 략)

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

2.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소위원회의 구성 등) ① -

---- 3명 이상 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6조(서울총괄건축가 운영 등)
① -----

----- 민간전문가
로 서울총괄건축가 또는 서
울총괄계획가(이하 “서울총괄
건축가”라 한다)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시장 등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또는 설계비 2억원 이상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. 다만,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 또는 설계비 2억원 미만이라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가. (생략)

나. 교육시설관련 사업(학교 화장실개선사업 등) 및 사회복지시설관련 사업(어린이집 시설개선사업 등)

다. (생략)

3. ~ 7. (생략)

④ ~ ⑥ (생략)

⑦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총괄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, 그 밖의 업무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제37조(공공건축가 운영 등) ① ~ ④ (생략)

⑤ 시장은 공공건축가의 활동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

2. -----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교육시설 관련 -----
----- 사회복지시설 관련 -----

다. (현행과 같음)

3. ~ 7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 범위 -----

-----.

제37조(공공건축가 운영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 범위 -----

있으며, 이에 따라 예산을 지원
받은 공공건축가는 활동내역 등
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8조(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
축가의 해촉) 시장은 서울총괄
건축가 및 공공건축가가 제18
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
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-----.

제38조(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
축가의 해촉) ----- 서울총괄
건축가 및 공공건축가-----

-----.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